

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

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「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」을 운영합니다.

본 사업은 해외 정부·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수출논의가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제작비, 물류·통관비, 현지 설치·운영비 등 현지 실증을 위한 설치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수출을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.

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스마트팜 분야 농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년 1월 20일

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5년 스마트팜 해외 실증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협약일 ~ '25년 11월
- 대상국가 : 제한없음
- 지원대상 : 대한민국에 법인을 둔 국내 스마트팜분야* 농산업체로 해외 정부·기관·기업 등과 수출논의**가 진행 중인 기업
 - * 환경제어시스템, 로봇, 양액기, 부품(센서 등), 비료 등 스마트팜 관련 기술·제품 및 해외 스마트팜 시설구축 턴키 수출·수주 포함
 - ** 수출계약서, 업무협약서, LOI, 실증의향서 등 현지 수요를 반영한 서류 필수
 - ※ 타부처·기관의 PoC, 해외실증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의 중복수혜 불가능
- 모집규모 : 5~6개사
- 지원내용 : 기업당 사업비 내 해외 실증에 수반되는 비용
 - (사업비 구성) 1社당 최대 1억원(총사업비 기준)
 - * 지원 신청예산의 경우 해당국가 물가, 수출·수주 계약규모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근거 하에 산정해야 하며, 과다 계상시 심각한 감점사유가 될 수 있음
 - ** 프로젝트 규모 및 국가에 따라 총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며, 총사업비 및 자부담 규모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
 - (자부담 규모) 기업규모별 상이(총사업비의 20~50% 규모)

구분	세부 내용
중소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▶ 국비는 총사업비의 80% 이하, 자부담금 중 현금은 30% 이상
중견기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▶ 국비는 총사업비의 70% 이하, 자부담금 중 현금은 30% 이상
그 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위 분류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▶ 국비는 총사업비의 50% 이하, 자부담금 중 현금은 30% 이상

- (지원항목) 제품제작비(원자재 구매비), 물류·통관비, 현지 설치비 등
- 기업은 사업비를 현지 실증용 제품 제작(원자재 구매 등), 물류·통관비, 기타 실증에 소요되는 비용(현지 체재비 등)에 직접 집행
- * 단,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(제23조)에 근거, 자부담(현금) 소진 후 국비 사용
- 지원 비목 및 세부 내용

비목	지원항목	예산			세부 내용
		국비	자부담		
			현금	현물	
인건비	직원 인건비	X	X	O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본 지원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임직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* 기존직원(협약 전 채용)·대표자 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
재료비	재료·원료 구입비	O	O	O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외실증 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·원료
기계장치	수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장치	X	X	O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실용기술 개발, 성능개선, 시험, 검사 등에 필요한 반영구적 장비·설비, S/W 등 기존 보유 기계장치 * (현물) 취득(공급)가액의 10% 이내 또는 잔존가액 이내로 작성
외주 용역비	해외실증용 샘플제품 제작	O	O	X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완성할 수 없는 활동(샘플제품 제작, 제품기획, 기술 연구개발 등)의 경우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비용 지급 * 사업계획서 결과(수출) 달성에 필요한 부분 용역에 한정 ▶ 현지실증 제품 설치시 요구되는 현지 인력·기술 활용에 대한 비용(온실시공, 전기공사, 재배인력 등) * 현지 인력사무소를 활용한 인력고용 및 대금지급을 원칙
	현지 설치비				
지급 수수료	시험분석 및 인증료	O	O	X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수행을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* 국내외 시험·인증비, 해외 운반비(수출 한정) 등 ▶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검토 및 회계정산 수수료 * 농진원 지정 회계정산기관 통한 회계감사비 필수 반영 (부가세 제외 100만원, 사업비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)
	해외 운반비				
	회계감사비				
임차료	기자재 임차	O	O	X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실용기술 개발, 성능개선, 시험·검사 등에 필요한 반영구적 장비·설비, S/W 등 임차 비용
국외 여비	국외출장을 위한 여비	O	O	X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현지 실증을 위한 기업소속 임직원의 국외출장 여비 중 항공권, 숙박비, 여행자보험료 지급 * 기업 소속 확인을 위해 4대보험가입자 명부 제출 必 * 여비 기준 및 국가등급 구분은 '공무원 여비규정'에 준함

* 지원 항목 및 항목별 금액은 기업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구성 가능

** 모든 지출은 증빙 가능해야하며, 제시된 항목 외 지원 희망시 농진원과 사전협의 필수

2. 참가 신청

- 신청기간 : 2025년 1월 20일(월) ~ 2월 7일(금) 16시
- 신청방법 : 이메일 접수(global@koat.or.kr)

< 제출 시 유의사항 >

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번호 순으로 개별.pdf파일(합본X)로 저장하여
파일명: [업체명]2025년스마트팜해외실증지원사업.zip로 자료 제출

제출서류

구분	제출 서류	비고
필수서류 *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점됨에 유의	1. 사업계획서 1부	양식 1
	2. 지원사업 신청서 1부	양식 2
	3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	양식 3
	4. 참여서약서 1부	양식 4
	5. 현물자부담 납부 확인서 1부	양식 5
	6. 사업자등록증(개인·법인) 1부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 1부 * 개인과 법인사업자를 모두 가진 경우, 사업자등록증은 모두 제출	
	7. 기업규모확인서(중소·중견기업 해당)	
	8. 사업추진 관련 해외기업(관)과의 체결문서 사본 1부 * 수출계약서, MOU 등 객관적으로 수출 진행여부 파악가능 자료 한정	
	9. 최근 3년('22~'24) 수출실적 증빙자료 각 1부 *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),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(한국무역협회 발급) 등 증빙서류 / 간접수출액 불인정	
	10. 최근 3년('22~'24)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각 1부	
	11. 유효기한 내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 1부	
	12. 기업 신용평가등급 자료 1부 *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를 원칙으로 하되, 해당 서류 미비시 유효기간 초과 서류도 인정(단,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음)	
	13. 회사소개서 및 제품 홍보자료 각 1부 * 국문, 영문, 현지어 및 기타 언어로 제작된 영상, 브로슈어 모두 해당	
	14. 사업계획 발표자료 1부 * 15분 이내 발표 가능한 분량으로 파워포인트(ppt) 프로그램 사용하여 제작 ** 발표자료는 기업개요를 비롯하여 ①프로젝트 추진경과, ②지원금 사용 목적·계획, ③기대성과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자체 제작	
기타서류 (선택사항)	15. 수출 진척도·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일체 * (예시) ①상대기업(관) 신뢰도 증빙(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 신용 조사결과(요약보고서), 기타 사설 신뢰도 평가기업 발급 자료 등) ②과거 해당 파트너의 당사·타기업과의 수출계약 이행여부 확인자료 ③해당 파트너와의 논의 및 네트워킹 경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	
	16.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*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증 사본, 각종 인증서 등	

□ 지원 제한

< 참가지원 제한 대상 >

※ 아래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, 선정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

- ① 휴·폐업 중인 기업
- ②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- ③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
- ④ 「보조금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
- ⑤ 집행잔액 등 반납금,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,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,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
- ⑥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
- ⑦ 고용노동부 공시 체불사업주 명단 등록 기업
- ⑧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
- ⑨ 기타 사업시행지침 등에서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3. 지원업체 선정 평가

□ 평가방법 : 1단계 서면(서류)평가와 2단계 대면(발표)평가, 2단계*로 진행

* 최종 선정기업 대상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프로젝트 규모 및 국가 특성 등을 검토, 기업별 총 사업비 규모 최종 확정예정

① 서면(서류)평가 : 선정평가위원회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평가 실시하여 고득점 순 10개사 선발

* 단, 제출기업이 10개사 이하일 경우, 서면평가 생략

② 대면(발표)평가 : 제출한 수행계획서에 기반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* 하고,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 최종 선발(6개사 이내)

* 기업당 30분(질의응답 포함) 내외, 일정·장소는 서류평가 선발기업 대상 별도 통지

□ 점수배점 : 각 평가단계별 100점 만점(서류, 발표평가 평가항목 동일)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업역량 및 제품기술력 (30)	▶ 기업의 사업추진 능력 및 자부담 현금 비율, 추가 재원 투입 의지 등	10
	▶ 수출을 위한 기업의 실적, 노력, 성과	10
	▶ 수출대상 제품·서비스의 기술력 및 수출경쟁력	10
수출대상 적절성 및 수출가능성 (40)	▶ 수출 대상국가 및 기관(기업)의 적정성 및 신뢰도	20
	▶ 수출관련 서류의 세부 내용 및 수출계약 진척도	20
수행계획의 적절성 (30)	▶ 사업 목적 부합성,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	10
	▶ 사업 참여인력 구성·추진계획 등의 적정성	10
	▶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10
총점		100

* 별도 가감점은 없으며, 단계별 점수는 다른 단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

□ 동점자 평가기준

① 서면(서류)평가 : 동점자 모두 선발

② 대면(발표)평가 : ①수출대상 적절성 및 수출가능성 > ②수행계획의
적절성 > ③기업역량 및 제품기술력 순으로 항목 점수가 높은 기업선발

□ 접수마감일(2월 7일 16시)까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

* 접수마감일 이후 제출된 서류 불인정

□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,
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외되지 않더라도 최하점 처리하니 유의

4. 사업추진 일정(안)

* 아래 사항은 대내·외 여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추진절차	추진시기	주요내용	비고	
사업공고	'25.1.20. ~ '25.2.7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청 : 스마트팜 분야 기업 ▶ 신청 관련 서류 작성·제출 	(공모)농진원→기업 (제출)기업→농진원 * 상황에 따라 연장가능	
사업 선정	서면평가	'25.2월 둘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출서류 바탕 서면평가 ▶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	평가위원회 (내·외부)
	대면평가	'25.2월 셋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PPT 발표 및 질의응답 ▶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 	평가위원회 (내·외부)
	최종심의	'25.2월 셋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업별 총사업비 최종 확정 	평가위원회 (내·외부)
선정결과 통보	'25.2월 셋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선정결과 및 사업비 기업 통보 ▶ 평가위원 의견 중 피드백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* 선정기업은 발대식(2.27. 예정) 필참 	(통보)농진원→기업 (제출)기업→농진원	
사업협약 체결	'25.3월 첫째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계획서 수정 및 구체화 ▶ 협약 제반서류 제출 * 국비 및 자부담 통장사본 등 	기업↔농진원	
사업 시행 및 관리	협약일~ '25.11.3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비 1차 교부(약 70%) 및 집행 * 자부담금 선입금 및 선소진 必 	(교부)농진원→기업 (집행)기업→거래처	
중간평가	'25.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업 추진현황·예산집행을 평가 * 평가 후, 지원 계속 여부 결정 	평가위원회 (내·외부)	
최종점검	'25.12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최종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▶ 기업 실적 및 추가 수주현황 등 최종점검 * 점검 결과 성과창출 실패, 협약위반 사유 발생 시 사업비 환수 등 조치 ** 회계정산 결과 이상 없을시, 국비 잔액 (30%) 교부 	평가위원회 (내·외부)	
성과조사	'26.1.~ '28.12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수출·수주관련 모니터링 지속 	농식품부·농진원	

5. 문의처

□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본부 글로벌사업팀

* 담당 : 홍유현 연구원(063-919-1378), 한영은 연구원(063-919-1375)

* 공모에 대한 모든 문의는 전화로 질의함이 원칙이며,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아니하는 점을 인지

6. 유의사항

□ 농진원과 협약체결 이후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며, 선정 및 협약 이전 사용한 금액은 불인정

□ 총사업비는 국비 기준 1억원 이내 범위에서 구성하되, 국비:자부담 비율 및 자부담현물:자부담현금 비율은 공고문 필독 후 산정

□ 사업비는 최종 심의를 통해 기업이 사업계획서에 제안한 것보다 줄어들 수 있으며, 선정·협약 이후 국비의 증액은 불가함에 유의

□ 최종 선정 이후 총 사업비의 감액을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년도 농진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□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우선사용 및 소진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기간 종료 이후 잔여 국비는 소진한 자부담과는 무관하게 전체 반납

□ 선정기업은 추후 무역통계 정보제공 시스템에 대한 동의 필요

□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 시, 지원사업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

□ 선정된 후 개별기업의 사정으로 참여를 취소 또는 포기할 경우,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기업의 부담임(사용한 자부담 포함)

□ 공고문 상의 문구·용어의 해석에 대해 신청기업과 농진원간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농진원의 해석에 따르므로, 사전문의 및 확인 필수

붙임 :

[양식 1] 사업계획서

[양식 2] 지원사업 신청서

[양식 3]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

[양식 4] 참여서약서

[양식 5] 현물자부담 납부 협약서

[양식 6] 최종결과보고서